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지 역 보 건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개정('19.12.3)을 통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“난임의 예방 및 관리”를 신설하고,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아목 “난임의 예방 및 관리” 업무 구체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11조제2항의 “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난임시술에 관한 편의 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) ①·② (생 략)	제9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③ <u>법 제11조제2항의 “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난임시 술에 관한 편의 지원 및 정보제 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815, 2805